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1
결재일자	2016.1.5.
공개여부	부분공개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진승욱	송선애	강성구	01/05 오정식
협 조			

광진구 보훈회관 재위탁 약정



복 지 환 경 국
(복 지 정 책 과)

광진구 보훈회관 재위탁 약정

광진구보훈회관 수탁자인 운영협의회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계약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 및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등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 보훈회관 운영 신청은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보훈회관운영협의회)가 위탁 신청
-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기간)
 - 보훈회관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위탁 신청
 - ※ 광진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서 위탁운영(연장)신청 【광진구보훈회관 총무35650-73호(2015.12.11)】

■ 시설현황

- 시설명 : 광진구보훈회관
- 관 장 : 최영택 (2013.6.24. 운영협의회에서 선출)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0
- 규 모 : 지하1/지상5층, 대지 456㎡, 건물 1,399㎡

건 물 (단위:㎡)						
계	목욕탕 기계실 (지층)	24시간 편의점 (1층)	광복회·월남참전자회 구민정보화교육장 (2층)	전물군경유족회·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광복회 물리치료실(3층)	강당 (4층)	보훈회관 사무실 상이군경회 사무실 회의실(5층)
1,399.07 (424평)	278.6	218.19	225.57	225.57	225.57	225.57

- 직원수 : 총 6명

관 장	사무장	안전관리인	물리치료사	사무원	목욕탕관리인
1	1	1	1	1	1

■ 운영현황

- 운영방법 : 광진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월남참전자회

○ 위탁기간 : 3년간

- 위탁기간 : 2016. 1. 17 ~ 2019. 1. 16(3년간)

○ 운영경비 :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천원)

2015년			2016년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235,600	156,400	79,200	249,272	159,528	89,744	

○ 보훈회관 이용실적(2015년도)

안보교육	전쟁기념전시실	목욕탕	물리치료실	웃음치료 등	비고
1,181	851	6,181	3,661	3,384	

■ 약정체결내용 : 별첨 약정서 참조

- 운영목표 -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복지사업의 역할 수행
- 의무 - 회관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관관리자로서의 책임의무
- 약정기간 - 운영기간 3년으로 회관재산의 권리행사 금지
- 운영기간동안 위탁자의 지도·감독, 수탁재산의 무상사용허용, 위탁재산의 매매·양여·제3자에게 담보제공금지, 취득재산의 귀속 회관운영의 관리자로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금지
- 보조금 지급 및 사용관리 규정
- 법령준수, 손해보험가입 등 규정

첨부 : 1. 광진구 보훈회관 재위탁 약정서 1부.

2.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원 간담회 개최계획1부. 끝

광진구 보훈회관 재위탁 약정서

광진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0 소재 광진구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광진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운영목표) 회관은 종합적인 보훈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국가유공자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내 국가유공자간의 친목도모와 애국심 향상을 위한 각종사업전개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기풍진작과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책임) “위탁자”는 회관 운영 관리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며, “수탁자”는 회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관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관리권의 성격, 기능, 명칭 및 회계) ①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보훈회관 운영지침에서 정한 성격과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약정기간) 회관의 위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만료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위탁 운영을 이유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회관 또는 회관재산의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위탁자의 지도·감독)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회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운영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에 관하여 직접 점검 및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재산의 무상사용) “위탁자”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수탁자”는 무상 사용한다.

제7조(위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회관 운영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에 양여,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고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회관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8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자”의 수탁재산과 회관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과 기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그 귀속절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기부채납 방법에 의거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운영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의 취득처분) ① “수탁자”가 회관운영을 하면서 수탁재산과 “위탁자”에게 귀속할 재산을 취득·확장 또는 처분하거나 멸실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서 명세를 “위탁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재산처분대금은 “위탁자”에게 세입처리 한다.

제10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 회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보조금 사용관리) ① “수탁자”는 지급된 보조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규정, 광진구보훈회관 운영지침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해지 시 보조금 정산)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해지시까지의 비용에 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약정 체결 후 조속한 시일내에 재해복구 및 변상대상으로 정부가 허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제15조(법령의 준수)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보훈회관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시 또는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약정해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 언제든지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이 약정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이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가

해지 당시의 위탁재산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약정이행 및 약정해석) “위탁자”와 “수탁인”은 이 약정을 준수하고 이 약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9조(약정에 관한 소송) 이 약정에 관한 소송제기는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약정의 효력) 이 약정의 효력은 2016. 1. 17.자로 발생하며 본 약정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인”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월 16일

위탁자 광진구

위 대표자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수탁자 광진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

위 대표자 위원장 최영택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0